표창 대상 및 기준

□ 표창대상

○ 특허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, 일반국민(외국인 포함), 기관·단체

□ 자격기준

- (공무원)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,
 추천 당시 특허청에 2년 이상 근무한 자
 - ※ 연말 유공표창(유관기관 포함),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, 시상에 해당하는 표창 및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- (일반국민)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.
 다만,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
- (단체)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한 단체. 다만,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

□ 추천제한

- ㅇ 수사 중이거나,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- ㅇ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은 자
 - 다만, 경징계(감봉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표창 추천가능
 - 다만, 주요비위^{*}를 저지른 경우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
 - * 금품·향응 등 수수 및 제공, 횡령·배임·절도·사기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음주운전,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·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

-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·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
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청장 표창이 부적합하다고
 판단되는 자(단체 포함)
 - ※ 단,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(범죄경력조회·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)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,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
- (재표창 금지)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
 1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으며, 단체의 경우는 최근 2년
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
 - ※ 퇴직자 표창 및 시상의 경우엔 예외로 함
- ㅇ (이중표창의 금지)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

(서식6-1)

공적조서(포상)

						(앞쪽)
성 명			(한자)			
주 민 등 록 번 호			군번(군인인 경	우)		
			국적(외국인인 경	· 우)		
주 소						
직 업			소	속		
직 위			직 급 • 계	급		
추천 훈격(勳格)			추 천 순	위		
공 적 분 야			공 적 기	간		
공적 요지(70자 이내)						
조사자						
소 속						
직위(직급•계급)			성	명		(서명 또는 인)
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	
	년	월	일			
	추천관	직위			성명	
						관인

주요 경력					
연 월 일	이력사항				
과거 포상기록(훈장・포장・표창별로 기록)					
수여일(연 월 일)					
공적 내용					